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98
----------	----

제출일자 : 1997 . 12 . 2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법률 제5264호, '97. 1.13) 및 통합방위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5383호, '97. 5.31)의 제정 시행에 따라 통합방위업무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3조 제1항)
- 나. 의장은 사하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함 (안 제3조 제2항)
- 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함 (안 제4조 제1항)
- 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둠 (안 제4조 제3항)
- 마.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장사무와 구성을 규정함 (안 제6조)
- 바. 통합방위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관계법령

- 가. 통합방위법 제5조
- 나.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사하구·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 3 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사하구의회 의장

2. 육군 제6339부대 3대대장
3. 사하지역 관할 기무부대 부대원
4.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5. 사하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 다대지서장
7. 서부교육청 교육장
8.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자

제 4 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
-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 5 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6339부대 3대대 작전장교
2. 예비군 담당간사 : 육군 제6339부대 3대대 예비군 담당관
3. 총무담당간사 : 사하구 총무과장

4. 민방위담당간사 : 사하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 6 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동사무소내에 둔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⑥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조(취약지역관리)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 8 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